

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

2019 수시공모사업 <인권활동119>

예산편성가이드

■ 신청 지원금의 한도

- 신청금액이 지원 사업비의 기준(2백만원)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.

■ 자부담의 여부

- 자부담 여부는 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,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■ 관리운영비 편성 허용 범위

- 사업운영 담당자의 인건비 : 신청 지원금의 20% 이내에서 편성 가능
(단, 정부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.)
- 운영비 : 신청 지원금의 10% 이내에서 편성 가능
(단, 정부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단체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.)

■ 소득세 원천징수 범위

- 모든 인건비에 대해 125,000원 초과 지급시(1회 기준)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
■ 예산편성과목

항	목	세목
사업비	회의비	장소대관비, 다과비, 식사비 등 행사준비를 위한 회의 진행비
	행사진행비	장소대관비, 물품의 대여/구매/제작비, 자료제작비, 다과비, 식사비, 출장비, 교통비 등 행사진행을 위한 제반 비용
	홍보비	홍보물제작 및 발송비, 현수막, 광고비 등 사업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
	도서인쇄비	도서자료 구입 및 제작비, 출판비
	인건비	사업 진행에 필요한 회의참석비, 자문비, 강사비, 발제비, 토론비, 원고료, 거마비, 심사비, 통/번역료, 연구용역비, 영상 및 자료 제작시 용역비, 인터뷰 사례비, 공연 사례비 등 외부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
	기타사업비	위의 세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비
관리 운영비	인건비	사업운영 담당자의 인건비, 아르바이트, 단기근무자에 대한 비용
	운영비	사무용품비, 공공요금, 수도광열비, 통신비, 송금수수료 등 단체 운영비